

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04.24.

1차 개정 2022.04.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
2.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심의
3.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부총장, **기획처장**, 대외협력처장, 행정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, 인문사회과학대학장, 경상대학장, 이공과대학장, 예술체육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(당연직 포함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**개정 2022.04.20.**)

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소위원회)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제2조의 각 호 사항에 관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 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(경비지급)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기획예산팀-229, 2019.04.24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